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86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서왕진·신장식·김정호

이해민 • 조 국 • 정춘생

김재원 · 차규근 · 김준형

박은정 · 강경숙 · 김선민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 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 항

제44조제1항 중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사업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관련시설의 효율 개선 및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휴부지(遊 休敷地) 등을 활용한 설비 확충 방안

제45조의21제1항에 제6호의2,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10의2.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 너지 구조의 전환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항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⑧ ~ ③ (생략) ⑧ ~ □ (현행과 같음)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

있다.

② (생 략)<신 설>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 저 업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 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
너지공급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
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
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수행하려는 경
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
지 공급, 관련시설의 효율 개선
및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세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
업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

한 같다.

1. ~ 6. (생략)

<신 설>

7. ~ 9. (생 략)

⑤ ~ ⑫ (생 략)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 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11. • 12. (생략)

② ~ ⑤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휴부지(遊休敷地) 등을 활용한설비 확충 방안

7. ~ 9.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1(사업) ①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 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 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 업

10의2.온실가스감축과탄소중립 실현을위한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보급등에관한사업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